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1. 2.(월) 09:00

사람이 다닐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CCTV 설치 의무 제외 추진

-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ESS 설치·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등 18개 규제 개선안 확정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에서 개선방안 **논의·확정**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민생분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이차전지**는 전기차·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쌀'** 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우리 이차전지 업계는 한때 세계시장을 선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업체들이 저가 LFP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이하 '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ESS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집중하였다.

○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8.28),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 ESS 건축물 법적 분류 기준(가이드라인 '26년 10월 배포), 전기차-배터리 소유분리제('28년까지 실증특례), ESS 이격거리 기준(가이드라인 '26년 12월 예정) 등

□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주요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 합리화

○ (현행)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증가하고, BMS 등 CCTV 보다 효과적으로 배터리 관리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모든 컨테이너형 ESS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개선)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 등 CCTV 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

○ (현행) 해외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일체화**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지만 국내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전기설비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 (개선)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내부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기안전연구원에서 관련 R&D 진행 중(~'28년)

③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 합리화

○ (현행)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은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관리하는 폐기물·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 중 일부의 변경에 따른 공정 변경 시에도 **반복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 (개선)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27년)

④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

○ (현행)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5호)

○ (개선) **폐기물재활용업 등의 별도 특화기준을 수립**하여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업종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실태조사 용역 추진 및 특화 기준 마련(~'27년)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개선 과제 목록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고현웅 (02-2196-4030)
		담당자	전문관 박용호 (02-2196-40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개선 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소관부처
1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제도 합리화	기후부
2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	기후부
3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 합리화	기후부
4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	기후부
5	수익성 낮은 배터리 원료(인산철) 자원화를 위한 제도 마련	기후부
6	배터리 재활용 원료(블랙매스) 해외 유출 방지 제도화	기후부
7	ESS 발전원 자격 인정에 따른 망이용료 면제	기후부
8	폐배터리 관련 폐기물 비중 산정 및 변경신고 기준 표준화	기후부
9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단 입주 규제	산업부
10	배터리 대여사업자, 자동차 매매 폐차 알선 예외 필요	국토부 금융위
11	폐수처리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체계 개선	산업부 기후부
12	2차전지 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도입	산업부 재경부
13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기준 명확화[기발표]	기후부 국토부
14	ESS 이격거리 기준 마련[기발표]	기후부
15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 특례 도입[기발표]	기후부
16	ESS 사업의 전기안전관리자 비상주 선임 허용[기발표]	기후부
17	연구개발용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 제정 및 규제완화[기발표]	기후부
18	배터리 소유권 분리제 도입[기발표]	산업부 국토부

※ 추가 논의 예정 과제 (차기 분과위)

연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컨테이너형 ESS의 단위 용량 규제 개선	기후부